

부산직할시사하구결산검사위원선임·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8. 10 최진판의원의외 7명

나. 회부일자 : 1994. 8. 10

다. 상정일자 : 제34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운영위원회('94. 8. 18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최진판의원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,317호로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현실에
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○ 결산검사위원수

┌ 현행 : 3인이내

└ 개정 : 3인~5인이하로 하되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

○ 검사위원의 해촉 :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함(신설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부산직할시 사하구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수를 현행
조례 3인 이내에서 3인~5인 이하로 하되 의원은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, 검사위원의
해촉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본
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